



종로

종로구보

◇ 전 화 : 2148-1674

제1340호 2016. 9. 23.(금)

1.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2.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【고 시】

- 제2016-105호 동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 1

◎ 구보발행일은 매주 금요일이며,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합니다.

D-3 접수



D-2 편집



D-1 인쇄



D일 보급

기관의 장	
선 람	

F10 합								

 고시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6-105호

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4-88호(2014.10.10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, 종로구고시 제2014-86호(14.10.02), 종로구고시 제2014-113호(14.11.21), 종로구고시 제2015-31호(15.03.20), 종로구고시 제2015-115호(15.10.23), 종로구 도시개발과-2437호(2016. 3. 8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종로구 교남동 62-1번지 일대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인가하고,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02-2148-2692)에 비치하여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6년 9월 23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가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 - 나. 사업의 명칭 :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
2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

구역명	위 치	시행면적(㎡)
돈의문1구역	종로구 교남동 62-1번지 일대	152,130.5 (㎡) (존치 : 7,723.1)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사업시행자 :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현영

나.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59,401호(교북동, 부귀빌딩)
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6년 9월 19일

5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용 도	대지면적(㎡)	동 수	층 수	세대수	건축연면적(㎡)	비 고
주 택	소계	97,518.0000	30		2,715	375,327.7852
	분양	79,150.5800	25	지하5층 ~ 지상21층	1,919	302,488.5842
	임대	12,766.1000	5	지하2층 ~ 지상19층	496	48,302.6775
상 가	5,601.3200			300	24,536.5235	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- 건축시설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 공급세대수														상가 면적 (세대)
	계	33	37	39	42	44	45	54	59	77	84	101	116	138	
계	2,415	16	91	232	136	68	75	60	340	71	1,096	130	79	21	300
토 지 등 소 유 자	825	5	7				16		248	71	353	65	46	14	95
보류시설	9		1						2		3	1	1	1	2
일반분양	1,085	11	83				59		90		740	64	32	6	203
임 대	496			232	136	68		60							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: 변동없음

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: 변동없음

6. 기타 관계도서 : 생략(종로구청 도시개발과 ☎2148-2692 및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
정비사업조합에 비치 ☎720-5834). 끝.